

계절수업운영에관한규정

제정	1984.03.01	1차 개정	1994.05.01
2차 개정	1994.08.01	3차 개정	2000.10.05
4차 개정	2008.09.01	5차 개정	2009.03.01
6차 개정	2012.02.10	7차 개정	2014.12.08
8차 개정	2017.08.01	9차 개정	2019.0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24조제4항 및 교무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계절수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설과목) 계절수업에 개설할 교과목은 교육과정에 관계없이 교양, 취업 및 진로, 자격취득, 또는 집중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조(개설) 계절수업은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다만, 수강신청자가 적어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수강신청) 본 대학 재학생은 계절수업을 신청할 수 있다. 계절수업 이수학점은 수업년한 중 12학점까지만 인정한다. <개정 2017.8.1.>

제5조(등록)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강료는 학점당 정규학기 또는 2학기 등록금/18학점 나눈 금액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수업) 계절수업의 수업은 1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습, 원격수업 및 현장학습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1.>

제7조(출석 및 시험) 수업시수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시험 및 성적 산정 등은 학칙 및 교무규정에 따른다.

제8조(성적관리) ①계절수업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직전학기와는 구분하여 별도 처리한다. 다만, 해당학년도의 취득학점 합계, 졸업학점 합계 및 종합평균평점 산정에는 포함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및 교무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교무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